

#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금 신청 안내

## 1. 지원설비

- 1)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
- 2) 주요구성항목 : 아웃트리거 감지센서, 모니터, 각도·거리센서, 로드셀 등 일체

\* 방호장치 : 하중감지장치, 붐 각도·길이 센서,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장비 전복 방지를 위한 통합 컨트롤러

※ 방호장치의 부식 또는 파손 등의 중대결함이 있는 부품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소작업대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

## 2. 보조금 지원조건

- 1) 신청대상 :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

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

- 2) 지원조건

-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(산재보험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제출)
- 사업주(장) 신용평가 “양호”사업장(공단이 신용평가용역 체결기관에 의뢰)
-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“이행보증보험증권” 제출
-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투자금액(부가세포함 : 자부담금액 또는 투자금액 전액)을 공급업체에 지급하고 입금확인증 제출

## 3. 지원금액

- 1) 신청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
- 2)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하는 방호장치 단가의 70% 지원(제조사 단가와 다를 수 있음.)

## 4. 신청 시 제출서류

-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
-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- ④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
-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사업주 자필서명)
- ⑥ 상품설명서(카달로그 등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자료 등
  -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, 사양서 및 도면(가격근거서류 포함)
- ⑦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- ⑧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(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)
- ⑩ 설치희망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등 차량등록증 사본(방호장치 지원 시)